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9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권칠승·이병진·박해철

조 국・홍기원・박지원

이기헌 · 문금주 · 허 영

윤종군 · 김준혁 · 손명수

이상식 • 전용기 • 민병덕

의원(15인)

제안이유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경제 및 사회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발전 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도 모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산업의 확산에 따라 발생되는 인간의 기본권 침해, 편견이나 허위정보의 확산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발전 및 산업진흥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추진과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검·인증 등의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 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및 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에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인공지능 개발 ·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
- 라.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함(안 제8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정책과 계획의 수립·추진, 각종 인공지능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업과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및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자.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분야 창업과 인공지능 융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 중심의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인공지능 유리원칙을 확립하도록 함(안 제18조).
- 카.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 타.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칙적으로 개발과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 파.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의 확인 절차 및 고위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 등의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하.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인공지능 사회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자연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 2.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침해나 위협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개발과 이용이 금지된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고위험 인공지능"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국가안보 및 공공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험성이 높은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유형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 4.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

- 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 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 5.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6.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의 구현 등 개발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자
 -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
- 7. "이용자"란 인공지능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윤리 및 가치와 조화를 이루며, 경제및 사회발전과 인류의 공동이익에 기여하도록 개발·이용되어야 한다.
 - ② 인공지능은 인종·지역·성별·종교·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편 향되지 않고, 건강·고용·금융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이용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개발·이용되어야 한다.

- ③ 인공지능을 개발 및 이용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인공지능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과 역기능이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 지능이 창의적이며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 및 이용될 수 있도 록 각종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 능서비스가 원활히 개발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거나 인공지능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윤리 및 원칙을 준수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는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타 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배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인공지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하다)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과 전략
 -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3.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인공지능등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5.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6. 인공지능등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7.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의 정착에 관한 사항
 - 8. 인공지능 발전 및 이용 확산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 9.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10. 인공지능등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인공지능 실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공지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 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8조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추진 전략
 - 2.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실행계획과 추진실적 점검·분석
 - 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의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4.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의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등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5. 인공지능사회 확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 6. 인공지능등에 관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 7.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8.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9.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에 속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인공지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 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된다.

- ⑥ 위원회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한다) 및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의 개선, 인공지능의 올바른 개발·이용과 인공지능 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이하 "권고등"이라 한다)을 표명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권고등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및 임직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의견의 진술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⑨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 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권고등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은 법령·제도 등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 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⑫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항에 따른 권고등의 표명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인공지능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인공지능등에 관한 사업의 분석·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센터(이하 "센터"라한다)를 설치하거나 관련 공공기관 중에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 시행 지원
 - 2. 인공지능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성 과분석·평가 지원
 - 3.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과 조사, 정 보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유통 지원
 - 4.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의 조사·분 석 및 관련 법·제도 연구
 - 5. 인공지능등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 신뢰확보, 국민 안전을 위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대응방안 연구
 - 6.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문화 확산
 -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국가기관등이 위탁한 업무 또는 사업
 - ③ 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센터가 아닌 자는 국가인공지능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활용기반 조성

- 제10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촉진) ①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 2. 인공지능기술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4.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 관리 및 제공
 -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신뢰성·편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의 오작동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및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 2. 인공지능 접속 및 운용 관리 기록의 저장 및 관리 효율화
 - 3. 인공지능등의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과 활용

- 4.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 및 역기능 방지
-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과 이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는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 능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 하여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 · 연구개발
 -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 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하며, 인 공지능기술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서는 국제표준과 연계되 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제작, 생산, 수집, 구축 및 이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구축 및 제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관리하고 인공지능사업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운영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학습용데이터 구축 및 제공사업의 수행,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장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 제13조(기업의 인공지능등 도입·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등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등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교육 지원
 - 3.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 4. 그 밖에 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관리 및 제공
 - 2.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및 개발 기술의 이전·사업화 지원
 - 3.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지원
 - 4.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 5.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 단체의 육성
 - 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15조(인공지능 융합 등의 촉진)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 능산업과 그 밖의 기술 및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의2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등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또는 지원
 - 4.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공지능등에 관한 교육·훈련의 지원
 - 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내용,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등에 관한 국제적 수준 및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인공지능등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등에 관한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 2. 인공지능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정보의 제공
- 3.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및 외국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 4.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 5.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유통체 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
- 6. 그 밖에 인공지능등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정부는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 제18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 중심의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이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1. 인간 존엄성의 원칙 :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명은 물론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및 이용되게 할 것

- 2. 사회의 공공선 원칙 : 인공지능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사회의 안녕 및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개발 및 이용되게 할 것
- 3.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한 도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목적 및 의도에 맞게 개발·이용되도록 할 것
- ② 정부는 제1항의 윤리원칙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준수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윤리기준(그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유리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19조(인공지능등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① 정부는 인공지능등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등의 이용환경 조성
 - 2. 인공지능등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 3. 인공지능등의 안전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 평가 · 대응기술

- 의 개발 및 확산 지원
- 4. 인공지능사업자 단체 등의 안전성 · 신뢰성 확보 활동 지원
- 5. 그 밖에 인공지능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공지능등을 개발·제작·제공하는 자는 인공지능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1. 인공지능등의 작동 과정 및 결과 등이 논리적·객관적으로 설명 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 2. 인공지능등의 고위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검증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3. 인공지능등의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할 것 제20조(인공지능등의 신뢰성 등 검·인증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단체가 인공지능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증 또는 인증(이하 "검·인증등"이라 한다)을 하게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 정·보급
 - 2. 검 · 인증등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 3. 검 · 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 · 운영 지원
 - 4. 검 · 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5. 그 밖에 검 · 인증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 단체가 인공지능등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인증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 그 내용 및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인증등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사업자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검·인증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제2호 의 금지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된 인공지능의 제한적인 개발과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1. 범죄피해자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
 - 2. 특정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 또는 테러 공격에 대한 실질적이 고 임박한 위협의 예방
 - 3.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범인 추적 등 범인 검거를 위한 활동 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

용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고위험 인공지능의 확인) ① 제2조제3호의 고위험 인공지능 또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이용·제공하고 자 하는 사람은 그 인공지능이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히 확인하고 이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안전성 및 신뢰 성 확보를 위한 검·인증등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의 의무) ① 고위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인증등을 받아야 한다.
 - ② 고위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고지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서에 포함시키는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24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 수립·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 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과 업무는 그 소속기관의 장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과 업무는 제9조에 따른 센터 또는 인공지능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 워
- 제27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인증등을 받지 않고 고위험 인공지 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③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 인공지능 운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추진된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인공지능등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